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가합507927 판결 [사전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20. 7. 16.

판결 선고2020. 9. 1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472,648원 및 그 중 405,175,170원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9. 10.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2019.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790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무역 등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섬유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9. 4. 4.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은행(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 한도를 400,000,000원, 보증기간을 2020. 4.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를 '공사', 피고 회사를 '본인', 피고 B을 '보증인'이라 한다)

제8조(보증채무 이행금 등의 상환)

① 본인과 보증인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신용보증부대출 원금 및 약정이자)

2. 보증채무 이행으로 공사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의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공사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③ 본인과 보증인은 공사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에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사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8조 제2항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내보상요령을 두고 있으며, 국내보상요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 피고 회사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 10%이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6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회사는 2019. 9. 26. 위 대출금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D은행은 2019. 9. 27.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0. 2. 6. D은행에 대출원리금 405,175,1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변제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합계 3,321,2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23,722원을 회수하여 3,297,478원(= 3,321,200원 - 23,722원)이 남았다.

라. 피고 B와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피고 B은 2019. 10. 1.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에게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1. 접수 제1790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회사, B은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만 답변을 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 회사, B에 대하여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 회사, B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472,648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405,175,170원 + 채권보전비용 중 미변제금 3,297,478원) 및 그 중 405,175,17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2.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20. 2. 2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9. 10. 1.경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직전인 2019. 9.

26.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③ 이에 따라 원고가 2020. 2. 6.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여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E에 대한 신용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했던 반면, 소극재산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238,232,387원,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 약 4억 원²⁾ 등 합계 638,232,387원(= 238,232,387원 + 4억 원)에 이른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F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14,400,000원)³⁾, 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액 610,000,000원)⁴⁾, 주식회사 G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1,000,000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위 각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1,015,400,000원(= 314,400,000원 + 610,000,000원 + 91,000,000)에 이른 사실, ③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19. 12.경 H 주식회사에 약 1,532만 원의 채무를 연체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사실에다가 채무자인 피고 B이 무자력인 사실에 대하여 피고 C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B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2)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수출용 원단 공급거래를

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238,232,387원이 있고, 피고 B은 위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C로부터 추가로 원단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의 재정상태나 다른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참조).

나)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이 2019. 10. 1.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 1억 5천만 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② 피고 회사가 피고 C로부터 2018. 10. 31. 68,927,380원, 2018. 12. 31. 138,942,554원, 2019. 3. 31. 90,382,773원 상당의 원단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B과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추가적인 원단 거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2019. 3.부터 2019. 5.까지 물품대금으로 합계 60,020,320원을 지급한 이후 2019. 9.경까지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238,232,387원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즈음 피고 B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3) 피고 C와 피고 B이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물품거래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피고 B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9. 10. 1.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숙

판사김선범

판사오지영

별지

-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과정 등에 비추어 위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소장 최종 송달일'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로 선택한다.
-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9. 10. 1. 기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보증한도액 4억 원 및 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9. 9. 27.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다.
- 3) 2006.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1759호로 마친 주식회사 F 명의의 근저당권
- 4) 2008. 10. 27. 위 등기국 접수 제57639호, 2011. 9. 16. 접수 제43449호, 2015. 7. 29. 접수 제46529, 2018. 5. 9. 제90501호, 2019. 4. 25. 제71078호로 각 마친 주식회사 D 명의의 각 근저당권
- 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